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 90호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시장사용료를 면탈한 자에게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부담 부과

2. 주요내용

- 과태료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2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0. 1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 수단으로 요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요금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삭제	<삭제>